

## 주요 개정사항

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6	<p>3) 보건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·군·구 단위 에이즈 관리사업 계획 수립, 운영, 평가</li> <li>● 지역사회 HIV 감염 예방 및 편견 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추진</li> <li>● HIV 선별검사 수행</li> <li>● 관할 지역 내 HIV/AIDS 발견(사망) 신고 접수보고</li> <li>● HIV 감염인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보고</li> <li>●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(진료기관 연계 등)</li> <li>● <b>신설</b></li> </ul>	<p>3) 보건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시·군·구 단위 에이즈 관리사업 계획 수립, 운영, 평가</li> <li>● 지역사회 HIV 감염 예방 및 편견 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 추진</li> <li>● HIV 선별검사 수행</li> <li>● 관할 지역 내 HIV/AIDS 발견(사망) 신고 접수보고</li> <li>● HIV 감염인 역학조사 수행 및 결과보고</li> <li>● HIV 감염인 지원 및 관리(진료기관 연계 등)</li> <li>● <b>보건소 담당자 전문교육 필수 이수</b></li> </ul>	<p>보건소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이수 필수</p>
9	<p>2) 수시검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대상자 : 시·군·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</li> <li>- HIV 감염인의 배우자(사실혼 포함) 및 성 접촉자</li> <li>- 임신부의 산전검사 시</li> </ul> </li> <li>- <b>(신설)</b></li> </ul>	<p>2) 수시검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대상자 : 시·군·구청장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자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</li> <li>- HIV 감염인의 배우자(사실혼 포함) 및 성 접촉자</li> <li>- 임신부의 산전검사 시</li> </ul> </li> <li>- <b>헌혈 혈액검사 결과 HIV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</b></li> </ul>	<p>헌혈 혈액검사 결과 발견된 HIV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발생신고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염 의심자에 대한 수시검진 대상 추가</p>
13	<p>1. 총론</p> <p>4. 실험실 검사</p> <p>라. 검사의뢰 체계</p> <p>2) 검사의뢰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검사의뢰 : <b>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보건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감염인 의뢰를 위한 검사의뢰 (공문처리) 신청</b></li> <li>● <b>검사등록 :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의뢰 내용을 보건소 및 보환연 담당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검사의뢰 내용 등록</b></li> <li>● <b>접수확인 : 해당 의료기관은 등록된 검사접수에 대해 에이즈자원시스템(HASNet)에서 확인가능</b></li> </ul>	<p>1. 총론</p> <p>4. 실험실 검사</p> <p>라. 검사의뢰 체계</p> <p>2) 검사의뢰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검사의뢰 : <b>선별검사기관에서 해당 지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검사의뢰</b></li> <li>● <b>※ 방역통합정보시스템(<a href="http://eid.kdca.go.kr">http://eid.kdca.go.kr</a>) 병원체확인을 통해 검사 의뢰된 검체 중 양성 판정된 검체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(<a href="http://is.kdca.go.kr">is.kdca.go.kr</a>) 내 에이즈자원시스템(HASNet)에 신고대상 검체건으로 자동 연계됨</b></li> </ul> <p>(삭제)</p> <p>(삭제)</p>	<p>검사의뢰 사항을 현행화함 검사등록 등의 절차 없음</p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5	<p>나. 확인검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확인검사 의뢰</li> <li>-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(병원체확인) 사용 시: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결정으로 판정한 검체의 잔량이 <b>2mL</b> 이상인 경우: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'이관' 기능을 사용하여 최종 확인검사의뢰</li> <li>-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(병원체확인) 미사용* 시: &lt;별표 1-1&gt; 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 &lt;별표 1-2&gt; 작성 요령 참고) 하고 미결정 판정자 검체의 최종확인검사 의뢰는 &lt;별표 4-1&gt; <b>의뢰서와 미결정 검사 결과 &lt;별표 3-2&gt; 양식을 붙임으로 발송</b></li> </ul> </li> </ul>	<p>나. 확인검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확인검사 의뢰</li> <li>- <b>방역통합정보시스템(병원체확인) 사용 시: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시·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결정으로 판정한 검체의 잔량이 <b>1.1mL</b> 이상인 경우: <b>방역통합정보시스템</b>에서 '이관' 기능을 사용하여 최종확인검사의뢰</li> <li>- <b>방역통합정보시스템(병원체확인) 미사용* 시:</b> &lt;별표 1-1&gt; 의뢰서를 작성하여 공문처리 &lt;별표 1-2&gt; 작성 요령 참고) 하고 미결정 판정자 검체의 최종확인검사 의뢰는 &lt;별표 4-1&gt; <b>의뢰서 작성</b></li> </ul> </li> </ul>	<p>질병관리청에서 검사 시 필요한 최소 검체량 (유전자800uL, 항체검사250uL) 기준으로 변경함. 검사의뢰사항을 현행화함. : &lt;별표 3-2&gt; 양식을 사용하지 않음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	<p>5. 신고 <b>(신설)</b></p>	<p>5. 신고</p> <p>※ <b>헌혈자 중 HIV 양성자(감염 의심자) 발견 시 처리 절차</b></p>	<p>헌혈 혈액검사 결과 발견된 HIV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발생신고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염 의심자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1	<p>5. 신고 <b>(신설) 헌혈자 통보절차</b></p>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내용</th> <th>주체</th> <th>방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발역·발역체계 검사결과 양성자 발견신고</td> <td>(신고서식) 24시간 이내 (신고서식) 사용규칙 별지 제1호의 2</td> <td>발역원 → 질병청</td> <td>시스템 (HasNet)</td> </tr> <tr> <td>감염 의심자 정보확인</td> <td>(정보확인) 발역검사결과 발한 신고에 근거해 양성자(감염 의심자) 확인</td> <td>감염청</td> <td>시스템 (HasNet)</td> </tr> <tr> <td>HIV 수시감염통지</td> <td>(법적근거) 법 제103 제2항 제2호에 따른 수시감사 대상자로 통지 *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(통보방법) 유선으로 통지 후 본인에 지명하는 방법으로 전달 (고려사항) 공인 통 본인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서翰을 취하도록(의뢰) 국가생물자원정보통신원(의뢰방법) 공문서</td> <td>질병청 → 헌혈자</td> <td>유선, 문자, 이메일</td> </tr> <tr> <td>관할 보건소 검사제외</td> <td>(법적근거) 생체기능장애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규칙 제2조 (의뢰방법) 공문서</td> <td>질병청 → 보건소</td> <td>유선, 공문</td> </tr> <tr> <td>HIV 검진</td> <td>(감진실시) 보건소는 헌혈자와 협의해 검진실시를 권고하고, 검진 실시</td> <td>보건소 → 헌혈자</td> <td>유선, 대면</td> </tr> <tr> <td>검진결과 통보</td> <td>(법적근거) 검진을 실시한 보건소는 법 제103조의2제1 항의 따른 검진결과 권고에 해당 (통보방법) 본인이 지명하는 방법으로 통보 * 감염여부의 분별대 소속인 경우 분별대 통보 (법적근거) 법 제103조의2제1항 후단 (통보방법) 공문서</td> <td>보건소 → 감염인 (헌혈자) 보건소 → 군부대</td> <td>유선, 대면 (헌혈자) 공문서 (사용계)</td> </tr> <tr> <td>감염인 발견신고</td> <td>(신고서식) 24시간 이내 (신고서식) 사용규칙 별지 제1호</td> <td>보건소</td> <td>시스템 (HasNet)</td> </tr> <tr> <td>역학조사</td> <td>신고 보건소가 역학조사 실시</td> <td>보건소 → 감염원</td> <td>유선, 대면</td> </tr> <tr> <td>역학조사결과 보고</td> <td>역학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</td> <td>보건소 → 질병청</td> <td>시스템 (HasNet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<b>&lt;그림4&gt; 헌혈자 HIV 감염인 검진 통보 절차</b></p>	구분	내용	주체	방법	발역·발역체계 검사결과 양성자 발견신고	(신고서식) 24시간 이내 (신고서식) 사용규칙 별지 제1호의 2	발역원 → 질병청	시스템 (HasNet)	감염 의심자 정보확인	(정보확인) 발역검사결과 발한 신고에 근거해 양성자(감염 의심자) 확인	감염청	시스템 (HasNet)	HIV 수시감염통지	(법적근거) 법 제103 제2항 제2호에 따른 수시감사 대상자로 통지 *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(통보방법) 유선으로 통지 후 본인에 지명하는 방법으로 전달 (고려사항) 공인 통 본인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서翰을 취하도록(의뢰) 국가생물자원정보통신원(의뢰방법) 공문서	질병청 → 헌혈자	유선, 문자, 이메일	관할 보건소 검사제외	(법적근거) 생체기능장애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규칙 제2조 (의뢰방법) 공문서	질병청 → 보건소	유선, 공문	HIV 검진	(감진실시) 보건소는 헌혈자와 협의해 검진실시를 권고하고, 검진 실시	보건소 → 헌혈자	유선, 대면	검진결과 통보	(법적근거) 검진을 실시한 보건소는 법 제103조의2제1 항의 따른 검진결과 권고에 해당 (통보방법) 본인이 지명하는 방법으로 통보 * 감염여부의 분별대 소속인 경우 분별대 통보 (법적근거) 법 제103조의2제1항 후단 (통보방법) 공문서	보건소 → 감염인 (헌혈자) 보건소 → 군부대	유선, 대면 (헌혈자) 공문서 (사용계)	감염인 발견신고	(신고서식) 24시간 이내 (신고서식) 사용규칙 별지 제1호	보건소	시스템 (HasNet)	역학조사	신고 보건소가 역학조사 실시	보건소 → 감염원	유선, 대면	역학조사결과 보고	역학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	보건소 → 질병청	시스템 (HasNet)	<p>헌혈 혈액검사 결과 발견된 HIV 감염 의심자에 대하여 발생신고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염 의심자에 대한 처리절차 신설</p>
구분	내용	주체	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발역·발역체계 검사결과 양성자 발견신고	(신고서식) 24시간 이내 (신고서식) 사용규칙 별지 제1호의 2	발역원 → 질병청	시스템 (HasNet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염 의심자 정보확인	(정보확인) 발역검사결과 발한 신고에 근거해 양성자(감염 의심자) 확인	감염청	시스템 (HasNet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HIV 수시감염통지	(법적근거) 법 제103 제2항 제2호에 따른 수시감사 대상자로 통지 * 감염되었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는 사람 (통보방법) 유선으로 통지 후 본인에 지명하는 방법으로 전달 (고려사항) 공인 통 본인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는 서翰을 취하도록(의뢰) 국가생물자원정보통신원(의뢰방법) 공문서	질병청 → 헌혈자	유선, 문자, 이메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할 보건소 검사제외	(법적근거) 생체기능장애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진단규칙 제2조 (의뢰방법) 공문서	질병청 → 보건소	유선, 공문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HIV 검진	(감진실시) 보건소는 헌혈자와 협의해 검진실시를 권고하고, 검진 실시	보건소 → 헌혈자	유선, 대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검진결과 통보	(법적근거) 검진을 실시한 보건소는 법 제103조의2제1 항의 따른 검진결과 권고에 해당 (통보방법) 본인이 지명하는 방법으로 통보 * 감염여부의 분별대 소속인 경우 분별대 통보 (법적근거) 법 제103조의2제1항 후단 (통보방법) 공문서	보건소 → 감염인 (헌혈자) 보건소 → 군부대	유선, 대면 (헌혈자) 공문서 (사용계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감염인 발견신고	(신고서식) 24시간 이내 (신고서식) 사용규칙 별지 제1호	보건소	시스템 (HasNet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역학조사	신고 보건소가 역학조사 실시	보건소 → 감염원	유선, 대면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역학조사결과 보고	역학조사 결과 시스템 입력	보건소 → 질병청	시스템 (HasNet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30	<p><b>사. 선 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항선원이 승선하여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출항 전 감염내과를 방문하여 장기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함</li> </ul> <p>※ <b>관련법령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9조</b></p>	<p><b>사. 선 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항선원이 승선하여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동안 보험급여가 정지되므로 출항 전 감염내과를 방문하여 장기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함</li> </ul> <p>※ <b>관련법령 :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4조</b></p>	관련 법령 현행화
	<p><b>자. 외국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로 '감염인 번호'가 부여된 자만 해당됨</li> </ul> <p>- <b>지원 시점: 최종판정일로부터 지원 가능</b></p> <p>- <b>(산설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모든 문서는 인적사항 기재 없이 '감염인 번호'만을 사용하여 보고함</li> </ul>	<p><b>자. 외국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은 건강보험가입자로 '감염인 번호'가 부여된 자만 해당됨</li> </ul> <p>- <b>지원 시점: 확인검사 의뢰일부터 지원 가능</b></p> <p>- <b>관리보건소에서는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모든 외국인 감염인(신규 및 기존 지원 감염인)에 대하여 최초 1회 진료비 지원신청서(진료비 지원을 위한 실명 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서명 포함) 작성 및 제출을 안내</b></p> <p>※ <b>진료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지원 대상 외국인 감염인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 근거에 따라 확보할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신청 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서명란 마련('24년-)</b></p> <p>※ <b>진료비 지원을 위한 실명등록 관련 세부 사항은 이 지침 'HIV 감염인 관리·지원 6. 진료비 지원' 참고</b></p> <p>(삭제)</p>	외국인 감염인 진료비 지원시점 변경 및 실명 등록 신설
38	(산설)	<p><b>나. 진료비 지급을 위한 실명 등록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<b>실명 등록 필요성 안내</b></li> <li>○ <b>보건소 감염인 실명 등록</b></li> <li>○ <b>진료비 지원 신청 정보 에이저시스템(HASNet) 입력</b></li> </ul>	진료비 지원시점 변경사항 반영
39	<p><b>나. 지원 대상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 1.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·외국인</li> </ul> <p>→ <b>최종판정일로부터 지원함</b></p> <p>→ <b>입원기간 중 최종판정 받은 경우 입원일로 소급하여 지원함(산정특례 적용 필수)</b></p> <p>(예 1. 입원기간 2022.2.1.~2.5., 최종판정일 2022.2.4. → 2022.2.1.부터 지급)</p> <p>(예 2. 입원기간 2022.2.1.~2.5., 최종판정일 2022.2.10. → 2022.2.10.부터 지급)</p>	<p><b>다. 지원 대상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상 1. HIV 감염 확진을 받고 실명으로 등록된 내·외국인</li> </ul> <p>- <b>확인검사 의뢰일('24년 1월 이후)부터 지원함</b></p> <p>※ <b>최종 확진 판정 이전이라도 HIV 감염 의심 증상 등이 발현되어 의료기관에서 당일 신속 치료 목적으로 진료가 제공된 경우 「확인검사 의뢰일」부터 지원 가능</b></p> <p>(예1. 확인검사 의뢰일 1. 31., 입원기간 2.1.~2.5., 최종판정일 2.9., → 1.31.부터 지급)</p>	진료비 지원시점 변경사항 반영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		<p>(예2. 확인검사 의뢰일 1. 31., 입원기간 2.1.~2.5., 최종판정일 2.9., → 1.31.부터 지급)</p> <p>(예3. 확인검사 의뢰일 2.2., 입원기간 2.1.~2.5., 최종판정일 2.14., → 2.1.부터 지급)</p> <p>※ 확인 검사 의뢰일이 입원 기간 내에 포함하는 경우 전체 입원 기간에 대해 진료비 지원가능</p> <p>- 확인검사 의뢰일부터 최종확진일 전까지 진료비 청구건에 대한 산정 특례 적용여부 확인 필요</p> <p>※ 해당 기간 산정 특례 적용 불가 시 해당기간 청구된 진료비 계산서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원</p>	
41	<p><b>라. 진료비 청구 (신설)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감염인이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<b>보건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</b>는 영수증 원본(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)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임</li> <li>● 감염인이 진료비 선 결제가 곤란한 경우에 시·도(혹은 시·군·구) 진료비 지원 담당자는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를 적극 요청함</li> <li>- 진료비 후불이 협조된 경우 <b>감염인의 진료비 청구 계정에 해당 의료기관의 계좌를 기입하여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함</b></li> <li>● 보건의료인 등이 업무 수행 중 HIV 감염인의 혈액에 노출된 경우</li> </ul>	<p><b>마. 진료비 신청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'24년 1월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모든 감염인(신규감염인 및 기존 지원 감염인)은 최초 1회 진료비 지원신청서(붙임9, 진료비 지원을 위한 실명등록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서명 포함)를 작성하고 진료비 영수증 등 청구 증빙자료와 함께 감염인 관리 보건소에 제출해야 하며, 이후 신청 건부터는 진료비 지원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청구 증빙자료만 제출 가능</li> <li>- 후불제 의료기관의 진료비 대리 신청의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HIV/AIDS 진료비 대리청구서 (붙임9), 청구 증빙 자료 등을 감염인 관리보건소에 제출해야 함</li> <li>* 후불제 의료기관 청구담당자는 진료비 지원 대상자에 대해 대리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문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신청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후불제 의료기관에서는 일괄 신청을 위한 별도의 서식을 자체적으로 제작 활용하여 청구할 수 있음</li> <li>● <b>처리기간</b></li> <li>- 진료비 지급 보건소에서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처리</li> <li>● <b>진료비 지원을 위한 증빙서류</b></li> <li>- (감염인) 진료비 영수증 원본(수기용 간이 영수증 해당 안됨), 본인명의 통장사본</li> <li>- (후불제 의료기관)HIV/AIDS 진료비 대리청구서에 의료기관의 지급 계좌를 기입하여 보건소에 진료비 영수증 등 청구 증빙자료와 같이 제출(보건소에서 심사 후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)</li> <li>* 감염인이 진료비 선결제가 곤란한 경우에 시·도(혹은 시·군·구) 진료비 지원 담당자는 의료기관에 후불 협조를 적극 요청해야함</li> <li>- 보건의료인 등이 업무 수행 중 HIV 감염인의 혈액에 노출된 경우</li> </ul>	<p>진료비 지급절차 개선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</p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	<p>- <u>의료기관 등에서</u> 관련 사항에 대한 경위보고서 및 영수증 원본과 함께 지출요청 공문을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함</p>	<p>• <u>의료기관 등에서 HIV/AIDS 진료비 지원신청서</u>, 관련 사항에 대한 경위보고서 및 영수증 원본과 함께 지출요청 공문</p> <p>* <u>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 신청</u></p>	
42	<p><b>마. 진료비 심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원범위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, HIV/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,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(본인일부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) 지원함</li> </ul> </li> <li>● 지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하고, 본인 부담상한액은 지원 대상 본인이 제출한 건강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</li> </ul> </li> </ul> <p>*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국민건강 보험법 시행령」 <b>별표3의 제2호나목 1)나)의 본인 부담상한액 이내 지원</b></p>	<p><b>바. 진료비 심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지원범위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, HIV/AIDS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,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(본인일부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) 지원함</li> </ul> </li> <li>● <b>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까지 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<b>본인부담상한액은 지원 대상 본인이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</b></li> <li>* <b>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3 2024년 본인부담상한액의 상한액기준보험료 제2구간 본인부담상한액 이내 지원</b></li> </ul> </li> <li>● 지원금액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산정특례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(10%)</b></li> <li>- <b>전액본인부담금</b></li> <li>- <b>선별급여의 본인부담금</b></li> </ul> </li> </ul>	<p>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개정(23.6.27)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 지원 기준 변경</p>
43	<p><b>바. 진료비 지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진료비 지급액의 50%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, 나머지 50%는 질병관리청에서 부담</li> </ul> <p><b>(산설)</b></p>	<p><b>사. 진료비 지급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진료비 지급액의 50%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, 나머지 50%는 질병관리청에서 부담</li> <li>● <b>진료비 지급 관할 보건소에서는 지원신청 내역 및 처리결과등을 에이즈지원시스템(HASNet)에 입력</b></li> </ul>	<p>진료비 지급절차 개선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</p>
	<p><b>사. 진료비 지급 현황보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<b>관할 시·도(혹은 시·군·구)에서는 진료비 지급 발생 시 HASNet으로 보고함</b></li> <li>● <b>진료비 지급 현황은 반기별로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HASNet으로 보고하여야 함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반기: 7월 15일까지</li> <li>- 하반기: 익년 1월 15일까지</li> </ul> </li> </ul>	<p><b>(삭제)</b></p>	<p>현행화</p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4	(신설)	<p><b>&lt;표 3&gt; 진료비 지급을 위한 감염인 실명전환 및 진료비 지원 처리 절차</b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76 409 1069 753"> <thead> <tr> <th>일차</th> <th>내용</th> <th>일차</th> <th>담당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차</td> <td>진료비 지급을 위해 실명전환을 위한 개인정보, 실명 정보(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명) 등 관련 정보의 수집</td> <td>2차</td> <td>실명전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</td> </tr> <tr> <td>2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3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3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4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4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5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5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6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6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7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7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8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8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9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9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10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10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11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11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12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12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13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13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14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14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15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15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16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16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17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17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18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18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19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19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20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20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21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21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22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22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23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23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24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24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25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25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26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26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27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27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28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28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29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tr> <td>29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</td> <td>30차</td> <td>개인정보 수집 완료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일차	내용	일차	담당	1차	진료비 지급을 위해 실명전환을 위한 개인정보, 실명 정보(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명) 등 관련 정보의 수집	2차	실명전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	2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3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3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4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4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5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5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6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6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7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7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8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8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9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9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0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10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1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11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2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12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3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13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4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14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5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15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6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16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7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17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8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18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9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19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0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20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1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21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2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22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3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23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4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24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5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25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6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26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7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27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8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28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9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29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30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진료비 지급절차 개선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
일차	내용	일차	담당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차	진료비 지급을 위해 실명전환을 위한 개인정보, 실명 정보(주민등록번호, 생년월일, 성명) 등 관련 정보의 수집	2차	실명전환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3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3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4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5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5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6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6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7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7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8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8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9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9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0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0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1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1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2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2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3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3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4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4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5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5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6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6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7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7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8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8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19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19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0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0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1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1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2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2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3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3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4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4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5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5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6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6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7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7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8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8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29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29차	개인정보 수집을 위한 동의서 작성 및 발송	30차	개인정보 수집 완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6	<p>II. 감염인의 관리·지원</p> <p>8. 행정사항</p> <p>가.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</p> <p>(신설)</p>	<p>II. 감염인의 관리·지원</p> <p>8. 행정사항</p> <p>가.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</p> <p>나. 예산의 변경 및 조정</p> <p>● '24년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의 세내역사업은 아래 3개 사업으로 이루어졌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HIV/AIDS 진료비 지원</li> <li>HIV/ 검진 시약비 지원</li> <li>성매개감염병 검진 시약 치료비·지원</li> </ul> <p>●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 보조사업 내의 세내역사업 예산 부족 시 지자체가 세내역사업 간 예산 조정 및 변경 가능함</p>	<p>지자체 보조사업비 효율적 분배를 위해 조정 및 변경 기준 신설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7	<p>나. 기록물관리</p> <p>● HIV 감염인 지원·관리 기록물</p> <p>- 감염인 이사 등 관리 보조소 변경 사유 발생 시 보관중인 대외비 처리방안</p> <p>※ 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(대통령령) 개정으로 2017.2.22. 이후 생산한 대외비(비공개 대상 정보 중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)는 각급 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고, 2017. 2.21.이전 까지 생산된 대외비는 개정 전과 같이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. 따라서, 'HIV 양성자 통보 및 관리'는 2014년까지 생산된 대외비 문서이므로, 비밀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함</p>	<p>다. 기록물관리</p> <p>● HIV 감염인 지원·관리 기록물</p> <p>- '15년 1.1일 이전 생산된 감염인 관련 대외비 문서는 일반문서로 재분류 실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안업무규정 제15조에 따라 생산자의 직권으로 일반문서로 재분류 가능하며 감염인 주소 이관 등으로 현재 대외비 관리기관과 생산기관이 다른 경우 생산기관으로부터 재분류 가능 답변 회신 (공문) 후 관리기관에서 재분류(위탁) 처리</li> <li>일반문서로 재분류 시 보존기간은 3년 또는 5년으로 책정 (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시행령[별표1]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름 (제26조 2제1항))</li> </ul>	<p>기존 생산 대외비 문서의 일반문서 전환 기준 마련</p> <p>15년 이후 HIV 관련 문서 대외비는 생산하지 않으며 대외비는 일반문서로의 전환이 가능하므로 관련내용 삭제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	<p>- 전출지 보건소는 보관중인 대외비 기록물을 전입지 보건소로 발송함</p> <p>- 대외비 기록물 수·발신 사항은 '대외비 관리 대장'에 기재하고, 유출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에 유의하여야 함</p> <p>- 대외비 기록물 발송·접수의 세부절차와 방법은 자치법규에 따름. 또는 아래 예시 참고함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p>[예시] 비밀 기록물 발송·접수 방법(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참고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비밀의 접수·발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II급 이상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함</li> <li>• 등기 또는 사송의 방법으로 발송</li> <li>• 이중 봉투로 포장(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별지 제11호 서식)</li> <li>• 비밀을 발송하거나 접수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'접수증' 사용 (「보안업무규정」 제17조, 「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」 별지 제12호 서식)</li> </ul> <p>- 비밀을 발송 할 때에는 접수증의 지르는 선 상단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 중 "수신", "참조", "견명", "사본번호" 및 "수량"을 작성한 후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을 잘라내어 발송</p> <p>-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와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, 취급자가 직접 접촉하는 경우는 직접 교부</p> <p>- 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 중 작성되지 않은 내용을 작성하여 생산 기관에 반송</p> <p>-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을 반송받은 생산기관은 그 접수증의 접수기록 부분과 발송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</p> </div> <p>- 대외비로 관리중인 감염인이 사망할 경우</p> <p>- 보관 중인 관련 대외비 문서 사본은 <b>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최소 5년간</b> 보존 후 파기</p> <p>※ 기존에 생산된 대외비는 지속적으로 대외비로 관리되어야하고, 2015.1.1. 이후로 HIV 관련 문서에 대한 대외비는 생산하지 않음</p>	<p>- 대외비의 일반문서로의 재분류 후 관리 방안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문서원본은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하거나, 이를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 활용하고자 할 경우 원본을 스캔하여 해당기관 전자문서 시스템에 등록 후 원본은 보존기간까지 별도 보관 (공공기록물법 시행령제29조)</li> <li>• 다만 원본을 폐기하고 보존매체만 보존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위원의 심사, 기록물 평가심의회 심의 및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록물 원본 폐기 가능 (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 43조제3항)</li> </ul> </div> <p>- '15년 1.1일 이전 생산 감염인 문서의 타 기관 이관</p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문서를 원본형태로 보관하고 있을 경우 해당 원본을 봉인하여 이관받을 기관으로 이관 공문 첨부하여 송부. 원본 폐기후 전자문서 형태로 관리중인 경우 일반적인 바깥개 전자문서 시행절차에 따라 이관공문 및 스캔 후 등록된 문서를 첨부하여 이관받는 기관으로 시행</li> </ul> </div> <p>- 대외비로 관리중인 감염인이 사망할 경우</p> <p>- 보관 중인 관련 대외비 문서 사본은 <b>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 보존 후 파기</b></p> <p>※ 기존에 생산된 대외비는 지속적으로 대외비로 관리되어야하고, 2015.1.1. 이후로 HIV 관련 문서에 대한 대외비는 생산하지 않음</p>	
51	<p>가.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목적) 감염인에게 복약 및 심리상담 등 통합 상담을 제공하여 건강유지·증진 및 사회적응을 촉진하고, 행동변화를 통해 전파 예방</li> <li>● (대상)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에서 진료받는 감염인 및 그 가족, 입원 감염인</li> </ul>	<p>가.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목적) 감염인에게 복약 및 심리상담 등 통합 상담을 제공하여 건강유지·증진 및 사회적응을 촉진하고, 행동변화를 통해 전파 예방</li> <li>● (대상) 의료기관감염인상담사업에 참여하는 의료 기관에서 진료받는 감염인 및 그 가족, 입원 감염인</li> </ul>	사업 역할(임무) 확대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내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료기관 감염내과에 상담간호사를 배치하여 대면, 전화, 온라인 상담을 제공</li> <li>- HIV 감염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감염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질병상담, 복약상담, 생활상담 등 통합 상담을 제공</li> <li>- 개인별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에이즈 유관기관 및 각 지역 사회자원 등을 연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내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료기관 감염내과에 상담간호사를 배치하여 HIV 감염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감염인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질병상담, 복약상담, 생활상담 등 통합 상담을 제공하여 환자 관리</li> <li>- 개인별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에이즈 유관기관 및 각 지역 사회자원 등을 연계</li> </ul> </li> </ul>	
53	바. 지원센터운영사업	바. 감염인 지원센터운영사업	지원센터 명칭 수정
54	사. HIV 감염인 쉼터 운영사업 <부산> <대구>	사. HIV 감염인 쉼터 운영사업	부산쉼터 사업 철회에 따라 관련 내용 수정
	자. 대상자별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대상) 동성애자, 외국인, 청소년, 노인, (에비)의료인 등</li> </ul>	자. 대상자별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대상) 동성애자, 외국인, 청소년, (에비)의료인 등</li> </ul>	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위탁사업 내 교육홍보 대상에 노인 포함되지 않으므로 삭제
	차. 취약계층 홍보물 지원사업(무료 콘돔 및 윤활 젤 보급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목적) 콘돔 및 윤활 젤을 동성애자와 시·도 보건소에 보급하여 배포된 콘돔 사용률을 높이고, 콘돔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함</li> <li>● (대상) 동성애자 관련 업소, 시·도 258개 보건소</li> <li>● (일시) 연중</li> <li>● (내용) 보건소용 콘돔은 전국 유흥업소 중심 관할 보건소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 대상자 관할 거점보건소 중심으로 우선 배포되며, 동성애자 콘돔 및 윤활젤은 패키지 제품으로 구성, 현장 및 비치 캠페인을 통해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배포함</li> </ul>	(삭제)	2024년부터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예산 교부
55	카. 동성애자 에이즈예방지원센터 타. 외국인 에이즈예방지원센터	차. 동성애자 에이즈예방센터 카. 외국인 에이즈예방센터	민간위탁사업명 수정
56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기관의 선정</li> <li>- (보조사업자 공모) 질병관리청은 2개 이상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<u>보조사업자</u>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으로 선정 해야 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사업기관의 선정</li> <li>- (보조사업자 공모) 질병관리청은 2개 이상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<u>보조업에서 대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으로 선정해야 함</u></li> </ul>	문맥 정리

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59~6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음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 수행 중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(사업안 사업내역 변경 포함)하고자 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<b>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내 사업내용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</b></li> <li><b>비목 간의 전용</b></li> <li><b>비목 및 세목의 신설</b></li> <li><b>비목-세목 간의 예산조정</b></li> <li>※ 보조·위탁사업자가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협의 후 '사업계획변경 요청서'를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 집행함</li> <li>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</li> <li>※ 단, 사업인력 변동시에는 별도로 승인절차 없이 월보고시 보고하며, 사업책임자 변동인 경우에는 승인 필요</li> <li>교부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·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다음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사업 수행 중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(사업안 사업내역 변경 포함)하고자 하는 경우</li> </ul> </li> <li><b>삭제</b></li> <li>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</li> <li>※ 단, 사업인력 변동시에는 별도로 승인절차 없이 월보고시 보고하며, 사업책임자 변동인 경우에는 승인 필요</li> <li>교부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·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</li> </ul>	예산교부 및 집행 부분으로 위치 조정
64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이월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이월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한 경우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의 승인을 받아야 함</b></li> </ul>	이월 불가 내용 추가
67-68	<p><b>(신설)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교육자료 개발(제작)을 위한 용역업체 계약 시 계약서 내 저작권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명시</b></li> <li>◦ 저작물 저작권재산권 양도 계약서(표준) 자료를 활용하여 저작권재산권 양도에 대한 내용 기재</li> <li>◦ 개발된 자료가 2차 가공 등 다양한 형태로 자료가 변형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'소유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재산권 일체를 갑에게 양도한다'의 문구 반드시 포함</li> <li>◦ 제작물 추가 인쇄 시 인쇄 업체 변경 등을 고려하여 출판권 또는 배타적 발행권에 대한 내용 포함</li> <li>- 공공누리 (<a href="http://www.kogil.or.kr">www.kogil.or.kr</a>) 또는 <b>공유마당(<a href="http://gongu.copyright.or.kr">gongu.copyright.or.kr</a>)의 이미지, 무료글꼴파일 등 활용</b></li> <li>- <b>자료 제작 시 원고 작성 집필진으로부터 저작권 확보를 위해 저작권 저작권재산권 양도 계약서 작성 필요</b></li> </ul>	교육, 홍보자료의 2차적저작권 내용 추가
67	<p>나) 콘돔 무료보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추가배포 요구</b></li> </ul>	<p>나) 콘돔 무료보급</p> <p><b>(삭제)</b></p>	콘돔 무료보급사업은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집행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72-80	<p>6) <u>교부금의 집행·이월·정산·중요재산 관리·정보공시·회계감사·예산변경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<u>사업운영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실시함(신설)</u></li> </ul>	<p>6) 교부금의 집행</p> <p>가) 별도계정 설정</p> <p>나) 보조금 사용 기준</p> <p>다) 카드의 사용 및 제한</p> <p>라) 보조·위탁사업 관련 계약</p> <p>마) 보조·위탁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</p> <p>바) 사업계획 변경</p> <p>7) 교부금의 이월</p> <p>8) 교부금의 정산 (<u>「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」 참고</u>)</p> <p>가) 정산보고서 작성·제출</p> <p>나) 정산보고서 검증</p> <p>9) 교부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</p> <p>10) 정보공시(<u>「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」 참고</u>)</p> <p>가) 적용범위</p> <p>나) 공시기한</p> <p>다) 공시내용</p> <p>11) 회계감사 (<u>「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」 참고</u>)</p> <p>가) 적용범위</p> <p>나) 감사인 선임 및 선임보고</p> <p>다) 회계감사 실시 및 결과보고</p>	<p>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있는 주요내용 안내</p>
85	<p>나. 지급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캠페인(교육) 관련 요원 수당 지급 기준 : 1시간 25,000원</li> <li>※ 1시간 초과 시 5,000원 추가 지급, <u>5시간에 한함(최대 45,000원)</u></li> <li>※ 진행요원비가 지급되는 경우 과도한 업무추진비(식비, 간식비) 집행을 최대한 자제</li> </ul>	<p>나. 지급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캠페인(교육) 관련 요원 수당 지급 기준 : 1시간 25,000원</li> <li>※ 1시간 초과 시 5,000원 추가 지급, <u>6시간에 한함(최대 50,000원)</u></li> <li>※ 진행요원비가 지급되는 경우 과도한 업무추진비(식비, 간식비) 집행을 최대한 자제</li> </ul>	<p>물가 인상에 따른 수당 인상 필요성 반영</p>
88	<p>다. 영수증 및 증빙서류</p> <p>1) 영수증 관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<u>예산 집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되, 기급적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은 받지 않도록 함</u></li> </ul>	<p>삭제</p>	<p>위치 조정</p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	<p>- 1만원 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,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(On-line)입금 활용</p> <p>-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1만원이상 집행 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</p> <p>※ 다만 개인신고사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</p> <p>시·군·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</p> <p>● 집행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는 집행 세부내역을 첨부하여야 함</p> <p>● 법인카드 결제 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부서를 명기하고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함</p> <p>2) 증빙서류</p> <p>● 모든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</p> <p>- 지출요청서에 결재자란이 포함되어야 함</p> <p>※ 예시 : 입금내역, 해당 문서, 계획서, 보고서, 방명록</p>		
110	<p>라. 교육·훈련 강화</p> <p>1) 보건소 담당자 전문교육 강화</p> <p>● <u>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과정</u> 지속 실시 (신설)</p> <p>● 보직변경자 우선 교육 실시</p>	<p>라. 교육·훈련 강화</p> <p>1) 보건소 담당자 전문교육 강화</p> <p>● <u>한국보건복지인재원 「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관리과정」</u> 교육과정 연 1회 필수 이수</p> <p>※ 근거: 「<u>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 제2항</p> <p>● 보직변경자 우선 교육 실시</p>	<p>보건소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이수 필수</p>
111	<p>2)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 교육</p> <p>● <u>의사, 간호사, 예비의료인, 검사요원 등에 대한 에이즈 교육</u></p>	<p><u>삭제</u></p>	<p>반복된 내용으로 삭제</p>
	<p>3) <u>에이즈 온라인 교육센터 운영</u></p>	<p><u>삭제</u></p>	<p>해당교육과정 미운영으로 삭제</p>
	<p>4) <u>검사업무 대한 정도관리</u></p>	<p>3) <u>검사업무에 대한 정도관리</u></p>	<p>문자표 수정</p>
125 -128	<p>V. HIV/AIDS</p> <p>2. 발생현황 및 역학적 특성</p> <p>가. <u>국외현황</u></p> <p>나. <u>국내현황</u></p>	<p>V. HIV/AIDS</p> <p>2. 발생현황 및 역학적 특성</p> <p>- <u>최신 통계로 업데이트</u></p>	<p>통계 현행화</p>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개정사유
133	<p>라. 대표적인 검사종류</p> <p>1) 효소면역검사(ELISA)</p> <p>● HIV에 대한 <b>항체</b>를 검사하는 기법으로, 선별검사에 주로 이용</p>	<p>라. 대표적인 검사종류</p> <p>1) 효소면역검사(ELISA)</p> <p>● HIV에 대한 <b>항체 및 항원</b>을 검사하는 기법으로, 선별검사에 주로 이용</p>	<p>최근 사용되는 HIV 검사용 ELISA 진단시약은 항원과 항체를 동시에 검사함</p>
152	<p>&lt;별표 2-1&gt; 질병관리청 성적서(예시)</p> <p>※ 각 기관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HIV 시험성적서 양식을 이용한다.</p>	<p>&lt;별표 2-1&gt; 질병관리청 성적서(예시)</p> <p>※ 각 기관은 <b>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HIV 시험성적서 양식을 이용한다.</b></p>	<p>서식 제공 시스템 수정</p>
155	<p>&lt;별표 3-2&gt; HIV 확인진단검사 결과양식</p>	<p>&lt;별표 3-2&gt; HIV 확인진단검사 결과양식 <b>(양식변경)</b></p>	<p>2024년부터 변경되는 진단검사(WB 2종 실시) 기준에 맞게 변경</p>
157	<p>&lt;별표 4-2&gt; 미결정판정자 추적검사</p> <p>4. 미결정판정자 추적검사 관리</p> <p>• <b>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</b> 미사용 시: &lt;별표 4-1&gt; <b>의뢰서와 미결정 검사 결과 &lt;별표 3-2&gt; 양식을 붙임으로 발송</b></p>	<p>&lt;별표 4-2&gt;미결정판정자 추적검사</p> <p>4. 미결정판정자 추적검사 관리</p> <p>• <b>방역통합정보시스템</b> 미사용 시: &lt;별표 4-1&gt; <b>의뢰서를 작성하여 공문 송부</b></p>	<p>검사의뢰 사항을 현행화함</p>
158	<p>&lt;별표 5-1&gt; HIV 수직감염의심 신생아/유아에 대한 추적검사 안내</p> <p>2. 필요성</p> <p>가. HIV에 감염된 <b>모체로부터 태어난 신생아, 유아는 모체의 HIV 항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생후 18개월 이전에 HIV 감염확인을 위하여</b> 추적검사가 필요</p>	<p>&lt;별표 5-1&gt; HIV 수직감염의심 신생아/유아에 대한 추적검사 안내</p> <p>2. 필요성</p> <p>가. HIV에 감염된 <b>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, 유아는 모체로부터 전달된 HIV 항체가 소실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생 직후부터 생후 18개월 경까지 주기적으로</b> 추적검사가 필요</p>	<p>의미 전달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구 수정</p>
198	<p><b>(신설)</b></p>	<p><b>붙임 9 HIV/AIDS 진료비 관련 양식</b></p>	<p>진료비 관련 양식 신설</p>